

발송번호: 9-5-2024-091497068

발송일자: 2024.10.28.

제출기일: 2024.12.28.

특 허 청 의견제출통지서

출원인 성명 주소
대리인 성명 주소 조혁근

출원번호 40-2024-0165879
상 품 류 제 25 류

1. 이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아래와 같은 거절이유가 있어 이를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제출기일까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(관계법령 : 상표법 제54조 및 제55조,

의견서 :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,

보정서 :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)

2. 위 제출기일에 대하여 매회 1월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기간연장승인통지는 하지 않습니다. 기간연장은 2회 이상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, 기간연장신청서는 지정(연장)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.

거 절 이 유

이 상표등록출원 상표는 다음 거절이유가 있어 통지합니다.

- 상표법 제35조 제1항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상표법 제38조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아래 거절이유의 상세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 상기 제출기일까지 의견(답변, 소명)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: 상표견본이미지

본 출원	인용
4020240165879	4020230174366

NEWWAN
뉴완

NUAN

(※ 본 통지서의 상표견본 이미지는 출원서에 첨부된 상표견본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)

[거절이유1] 상표법 제35조 제1항(또는 동법 제34조 제1항 제7호)

이 출원상표는 아래와 같이 타인의 선출원 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(또는 동일)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선출원 상표가 최종 설정등록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다만, 해당 선출원상표가 거절결정, 출원취하, 출원포기 또는 무효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○ 이 출원상표 “NEWWAN 뉴완”은 타인의 선출원상표 제4020230174366호 ‘NUAN’과 호칭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- 지정상품 : 전부

[거절이유2] 상표법 제38조 제1항

이 출원상표는 아래와 같이 지정상품의 명칭이 불명확하거나 상품분류가 잘못 기재된 상품이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다만, 아래와 같이 상표법 시행규칙 [별표1]의 상품류 구분표에 예시된 상품명칭을 참고하여 보정(삭제 포함)하고, 상품분류를 참고하여 정확한 상품류로 수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○ 불명확한 지정상품 : 25류 면티

- 보정예시) 면티셔츠/G4503. 끝.

